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관광진흥과장)
제출 연월일	2020. 01. .

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0. . . .

제출자 : 고령군수

1. 개정이유

-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내 대가야호스텔 운영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 내실 있는 호스텔 운영 및 향토문화학교 관리로 관광진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제2항, 제3항 및 별표1 (사용료) 신설

- 현행 사용료의 상한액 및 환불 관련 미규정
- 대가야호스텔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적정 사용료 책정
- 환불규정 신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

나. 제7조(손해배상) 규정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가. 관련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공정거래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사항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0. 1. 9. ~ 2020. 1. 29.

라. 성별 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없음

마. 규제영향 분석 결과 : 해당사항없음

바. 기타 참고사항 :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
- ③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사용료(상한액)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호 스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장애인실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1인실	1실	50,000원 이내	온돌
	2인실	1인	40,000원 이내	2층침대
	가족방 (2~4인)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4인실	1인	38,000원 이내	2층침대
	8인실	1인	35,000원 이내	2층침대
	10인실	1실	250,000원 이내	온돌
체험 프로그램		1명	-	재료비 등 실비 별도부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u>문화 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7조 ~ 제13조 (생 략)</u></p>	<p>제6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u>문화학교에서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u></p> <p>② <u>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군수가 아닌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변동·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야 한다.</u></p> <p>③ <u>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및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되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손해배상) <u>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향토문화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수목을 손상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u></p> <p><u>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별지 제1호】</p> <p style="text-align: center;">고령군향토문화학교 사용료(상한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20%;">사 용 료</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호 스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td> <td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더블침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온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층침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가족방 (2~4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더블침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8,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층침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층침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인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0원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온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체험 프로그램</td>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료비 등 실비 별도부담</td> </tr> </tbody> </table>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호 스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장애인실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1인실	1실	50,000원 이내	온돌	2인실	1인	40,000원 이내	2층침대	가족방 (2~4인)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4인실	1인	38,000원 이내	2층침대	8인실	1인	35,000원 이내	2층침대	10인실	1실	250,000원 이내	온돌	체험 프로그램	1명	-	재료비 등 실비 별도부담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호 스텔 ※이용시간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까지	장애인실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1인실	1실	50,000원 이내	온돌																																		
	2인실	1인	40,000원 이내	2층침대																																		
	가족방 (2~4인)	1실	60,000원 이내	더블침대																																		
	4인실	1인	38,000원 이내	2층침대																																		
	8인실	1인	35,000원 이내	2층침대																																		
	10인실	1실	250,000원 이내	온돌																																		
체험 프로그램	1명	-	재료비 등 실비 별도부담																																			

< 의안 소관 부서명 >

관광진흥과	
연 락 처	054-950-6654